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6월 12일, 윤건영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6년 7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8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전체회의(2026. 8. 2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
소위원회부

제438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8. 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원
안가결)

제439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6.9.1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축조심사, 찬
반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윤건영의원)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거나,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생략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이해식)

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, 원안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쳤음.

[붙임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광역시”를 각각 “통합특별시, 광역시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, “, 시”를 “, 통합특별시·시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 후단 중 “, 광역시장”을 “, 통합특별시장, 광역시장”으로, “· 광역시장”을 “· 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지방채 등) ① (생 략)	제19조(지방채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특별시, <u>광역시</u> 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 도”라 한다) 또는 특별시, <u>광역 시</u> ,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 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“특례 시”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 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 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 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 다.	② ----- <u>통합특별시, 광역시</u> ----- ----- ----- <u>통합특별시, 광역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47조(사업 조정) ① 지방직영기 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 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 에는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 는 특별시장· <u>광역시장</u> 및 도 지사가 조정하고, <u>시·도의 경</u>	제47조(사업 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</u> -----, <u>통합특</u>

